

수원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692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69267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5591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필용

피고, 항소인A

변론 종결 2021. 5. 26.

판결 선고 2021. 6. 3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5591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19,174,64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174,64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의 가. 1), 2), 3)항의 각 '원고'를 모두 '피고'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의 나. 2)항(제2쪽 제7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단10001호로 위 대출금 채무를 청구금액 186,876,078원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1. 3. 그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다.항 아래(제6쪽 제9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당표(갑 제9호증1))를 들어,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배당표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로 119,174,642원을 확실히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경매를 취하지 않고 대신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배당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2020. 1. 15. 작성되었는바, 피고가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계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기창

판사이지형

판사최호열

별지

1) 피고는 당심 2021. 3. 23.자 준비서면에서 위 배당표를 '을 제17호증'으로 표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9호증이 맞다.